

대구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248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2488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2122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변론 종결 2022. 5. 11.

판결 선고 2022. 6. 1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2122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7. 2. 접수 제30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상단 제10행부터 제15쪽 하단 제7행까지의 "(1) 2019. 7. 1.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2019. 7. 1.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적극재산

○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5, 8, 9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7. 1.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M 오피스텔)	180,000,000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5. 9. 25. 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B의 소극재산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N 아파트)	2,562,000,000원	
3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 공장)	1,378,082,000원	[별지 3]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9. 19.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B의 소극재산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합계	4,120,082,000원		

○ 피고는, 2019. 7. 1. 당시 B가 주식회사 P에 대하여 합계 410,000,000원 상당의 어음채권 또는 그 원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주식회사 P에 대하여 합계 410,000,000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B의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어음은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B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어음채권 또는 그 원인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 합계액을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B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에 대하여 합계 477,680,871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를 공급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T, 주식회사 U를 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439,380,871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B가 주식회사 V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3004) 2016. 11. 9. '주식회사 V은 B에게 2,800만 원을 2017. 1. 25.까지 2,800만 원을 지급한다. 주식회사 V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6머10716)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생일자 2018년이고 위 조정결정도 2016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가 2019. 7. 1. 당시 실제로 위 각 업체들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B의 위 공사대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채권 합계액을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극재산

○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3, 8, 9, 10호증, 제1심법원의 D기관 및 C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7. 1.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301,374,443원
2	F조합 대한 대출 채무	2,223,000,000원
3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국세 체납액	13,807,150원
4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114,005,479원
5	J조합에 대한 대출 채무	134,445,212원
6	C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457,845,350원
7	C은행에 대한 할인어음 채무	100,000,000원
8	주식회사 K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59,558,466원
합계	4,704,036,100원	

○ 피고는, 위 순번 6번의 C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에 관하여, C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중 2018. 2. 27.자 대출금 33,000,000원이 33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계산하면 C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는 합계 1,159,858,488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B가 2018. 2. 27. C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위 순번 7번의 C은행에 대한 할인어음 채무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해당 어음은 일종의 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할인은 어음을 이용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어음의 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C은행이 어음 만기일에 어음 발행인인 B에게 어음금 지급청구를 할 것이므로, 할인어음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어음을 별도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C은행에 대한 할인어음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2019. 7. 1.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 한편, 위 순번 8번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성격, 금액 및 주식회사 K이 받은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1245 판결) 등에 의하면 위 채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7.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인 2019. 7. 1. 기준으로 B의 소극재산 합계는 4,704,036,100원으로
적극재산 합계 4,120,082,000원을 초과하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병원

판사김규화

판사박지원

별지